

제 5 장 통관 절차

제 5.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상품이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서류와 신빙성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양식을 말한다.

발급기관이라 함은 부속서 5A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시행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동종동질 상품이라 함은 관세평가협정에서 정의된 “동종동질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것과 같다.

생산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것과 같다.

원산지소명서라 함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라 함은 관세를 산정할 목적으로 한, 또는 제4장(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한 상품 또는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라 함은 수입신고서류의 일부로서 수입상품이 제4장(원산지 규칙)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수입자가 관세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말한다.

제 5.2 조 원산지증명서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5B 및 5C에 규정된 2개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채택한다. 동 서식은 양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각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된다.
3.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2월간 유효하다.
4.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있는 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서명자가 사용하는 서명 및 관인의 견본을 제공한다. 성명·주소·서명 또는 관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타방 당사국에 통보한다.
5. 각 당사국은,
 - 가. 자국 영역 안의 수출자에게 수입자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함에 있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 나. 자국 영역 안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수출자가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 (2)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6.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발급되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단 한번 수입되는 데에 적용됨을 규정한다.

8. 비자발적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에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다.

제 5.3 조 특혜관세신청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 안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자국의 법령에 규정된 수입신고서의 일부로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수입자의 인지 또는 정보에 기초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할 것
- 나. 가호에 규정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시,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것. 그리고
- 다. 신청서가 기초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수입자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정확하다는 것을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만 수입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3.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할 것. 그리고

나.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관세납부일부터 수입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것

제 5.4 조 수출관련의무

1.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자국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자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허위진술이 허위진술 또는 허위표시에 관한 자국의 관세 법률 및 규정의 위반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한다.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황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5 조 기록유지의무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국 영역 안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다음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여 타방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되는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 가.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의 구매 · 비용 · 가격 · 선적 및 지불
- 나.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처, 구매, 비용, 가격 및 지불, 그리고
- 다.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간 또는 자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서류를 자국 영역 안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하며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유지된다.

제 5.6 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1. 제5.3조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 가. 상품의 총 관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또는 당사국의 통화로 환산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당사국이 정할 수 있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수입. 또는
- 나. 수입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건을 면제한 경우, 그 수입당사국 영역으로의 상품의 수입 다만, 그 수입이 제5.2조 및 제5.3조의 증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회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입당사국은 제1항의 수입자에게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5.7 조 특혜관세대우의 검증

1.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
- 나. 수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빙서류 또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를 요청
- 다.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거쳐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를 요청
- 라.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기록을 검토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 또는 원료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관찰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 또는
-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절차

2. 제1항의 가호·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서면 요청을 받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답변하여 회신한다. 이 기간 동안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을 수행할 당사국에게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답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일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정된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이 서면으로 제시한 정보요청에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 또는 미흡한 경우,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1항라호에 따라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 가. 방문을 수행하려는 자신의 의사를 다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 (2)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그리고

-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제안된 검증방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하여 줄 것을 통보 수령일부터 15일 내에 검증수행 당사국에게 요청하는 일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연기는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보된다.

7. 당사국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검증방문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8. 검증방문이 종결된 후, 검증 수행 당사국은 관련 법률 및 사실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 판정을 검증 대상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9. 당사국의 검증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당사국의 영토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인이 선적이 제4장(원산지 규칙)을 준수함을 입증할 때까지 그러한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동종동질상품의 후속 선적분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률·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취하여진 정지의 증거 및 상세사항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통지한다.

제 5.8 조 사전판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그 상품의 수입자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의 적용에서 제기되는 의문 및 원산지국과 관련한 서면 사전판정서를 발급할 것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사전판정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자국의 영역에 있는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수입 전에 그러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 나. 사전판정 요청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 다. 사전판정은 판정을 요청한 인이 제출한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규정

3.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사전판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언제라도 그 신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나.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사전판정을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날부터 90일 내에 발급한다. 그리고
- 다.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사전판정을 요청한 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판정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

4.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판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가. 판정이 사실착오에 기초한 경우
- 나.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다. 이 협정의 개정에 합치하기 위한 경우. 또는
- 라.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 또는 그 국내 법률과 규정의 변경에 합치하기 위한 경우

5. 각 당사국은, 사전판정을 받은 인이 사전판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전판정의 변경 또는 철회가 그러한 변경 또는 철회가 이루어진 날 또는 그에 명시될 수 있는 그 이후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날 이전에 이루어진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6. 제5항에 불구하고, 발급 당사국은 사전판정을 받은 인이 그 판정에 선의로 의존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 또는 철회의 발효일자를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연기한다.

7. 각 당사국은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을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누락하였거나 또는 판정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한 인에게 사전판정서를 발급한 경우 당사국이 상황에 합당한 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8. 양 당사국 중 일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 또는 검토 또는 불복청구 발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은 사전판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 제10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사전판정한 일자 또는 발급일 또는 판정에 명시될 수 있는 그 이후의 날부터 당해 상품이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 사전판정을 적용한다.

10. 수입당사국은 사전판정 일부터 3년간 그 판정을 적용한다.

제 5.9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제5.3조 내지 제5.7조의 요건과 자국법상 부과되는 그 밖의 법적 요건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수입상품의 신고된 원산지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 또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

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기록 및/또는 서류에의 접근 거부
- (2) 원산지소명서 또는 정보 요구에 대한 미반응. 또는
- (3)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련되는 기록 또는 서류의 미보존

다. 상품이 이 협정상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선적되거나 그 영역에서 환적된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는 다음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세관관리문서의 사본

(2) 하역 · 재선적 · 크레이팅 · 포장 · 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비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

(3) 하역 · 재선적 · 크레이팅 · 포장 · 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제출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상업서류

라. 일방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상품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당사국의 영역 밖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 수행자로부터 획득한 것을 포함하여 상품이 제4.4조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모든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5.10 조 일시반입 및 환적상품

1. 각 당사국은 「일시반입물품에 관한 A.T.A 까르네 관세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교역되는 물품의 일시반입절차를 지속적으로 원활화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그 영역으로의 환적물품의 통관절차를 지속적으로 원활화한다.

제 5.11 조 검토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내린 원산지결정 또는 사전판정에 대한 검토 및 불복청구 권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다음의 인에게 부여한다.

- 가. 이 장에 따라 원산지결정의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한 인. 또는
- 나.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은 인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검토 및 불복청구 권리가 다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가. 검토의 대상이 된 결정에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한 단계 이상의 행정적 검토⁵⁻¹⁾
-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단계의 행정적 검토⁵⁻²⁾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검토

제 5.12 조 별 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한 자국의 법률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 벌칙을 개별적으로 또는 병과하여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제 5.13 조 관세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 가. 원산지 검증

5-1)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행정적 검토단계는 관세행정기관을 감독하는 행정부처를 포함할 수 있다.

5-2) 싱가포르에서의 최종적인 행정적 검토 단계에서 취하여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검토는 보통법상의 사법적 심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1) 양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그 영역 안에서의 검증 과정에 협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품의 검증과정에서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협력한다. 그리고
- (2) 당사국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주재국 정부와 일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 주재 대사관에 관세연락관을 둘 수 있다.

나. 서류 없는 통관절차

- (1)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류 없는 통관을 증진하여 위하여 자국의 다른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관세시스템의 통합을 통하여 통관절차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한다.
- (2)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업계 간 영업거래를 지원하는 전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3)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각각의 관세행정기관과 무역업계 간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실현과 촉진에 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한다.

다. 위험 관리

- (1) 양 당사국은 고위험 상품에 대하여 검사활동을 집중하되, 저위험 상품의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관 활동에 있어 자국이 상품에 대하여 확인한 위험을 기초로 한 위험관리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 (2) 양 당사국은 통관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위험관리기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라. 최적 관행 및 정보의 공유

- (1)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관련 사안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는 통관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와 세관공무원을 위한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 (2)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당사국 각각의 국내 관세 법에 따라 통관절차 및 사안과 관련된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방안을 촉진할 수 있다.

마. 투명성

- (1) 각 당사국은 관세문제를 규율하는 자국의 법률·규정·지침·절차 및 행정심판을 인터넷 또는 문서 형태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 (2)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관세 문제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곳 이상의 상담창구를 지정, 설치 및 유지

하고, 그러한 문의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3)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국이 위험분석 실시 및 표적설정 방법에 관한 것을 포함한 법집행 절차와 내부 운영지침을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5.14 조 의무의 이행

1.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시점시까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법률 또는 행정상의 변경을 통하여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국내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 5.15 조 관세접촉선 및 임시관세위원회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약속한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 및 제4장(원산지 규칙)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부속서 5D에서 규정된 접촉선을 지정한다.
3. 일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하여 제기된 특정사안을 접수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사안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및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회신하기 위하여 자국 전문가를 배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접촉선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 조에서 제기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 사안이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 협정의 제22.1조에 따라 임시로 설치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5.16 조 비밀유지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개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의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비밀성을 자국 국내법에 따라 유지하고 이를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제 5.17 조 검 토

양 당사국은 제22.1조에 규정된 검토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증명제도를 검토한다.